

춘천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나527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나52765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7. 18 선고 2017가단36740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김기동, 남다운, 박수진, 이재구, 황영준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시열

변론 종결2020. 6. 25.

판결 선고2020. 7. 23.

제1심판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7. 18. 선고 2017가단3674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4. 3.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22.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송종선

판사김현정

판사신흥호

별지